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시의 관광종합계획 수립과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여행리포터즈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나. 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다. 시티투어 운영(안 제11조, 제12조)

라. 온라인 관광 마케팅 및 여행리포터즈 운영(안 제13조,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7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시 소재 관광호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홍보매체”란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방법으로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시정소식지·시정뉴스

- 홈페이지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 5.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 부호 · 음성 · 음향 · 이미지 ·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구미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5.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2.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4. 사진·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그 밖에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 운영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하여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를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구미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상악화, 감염병 확산 등 그 밖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공무수행을 위해서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이용자는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이용자가 투어차량 및 투어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홍보매체 및 여행리포터즈 운영

제13조(SNS 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매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매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이웃, 팬, 친구, 팔로워 등) 확보 및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여행리포터즈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관광홍보에 유용한 내용을 게재하기 위해 여행리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여행리포터즈는 구미시민 또는 시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여행리포터즈는 지역 관광지 소개와 여행정보 등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영상에 출연하여 소개한다.

⑤ 시장은 여행리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출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리포터즈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여행리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관광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대상 업무) ①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5. 사진·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시티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티투어, 여행리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안 제5조)
- 시티투어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비용(안 제11조)
- 여행리포터즈의 운영에 따른 원고료 및 출연료(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체적인 비용의 추계가 어려우며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3억 미만으로 예상됨.
- 시티투어 운영 소요예산액 : 45,000,000원
- 운영 위탁 경비 : 45,000,000원 × 1식 = 45,000,000원
- 여행리포터즈 운영 소요예산액 : 10,000,000원
- 원 고 료 : 30,000원 × 20명 × 5회 = 3,000,000원
- 출 연 료 : 70,000원 × 20명 × 5회 = 7,000,000원

4. 작성자

-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신 미 정 (480-2651)
- 관광진흥과 행정7급 이 선 영 (480-2652)

소 관 부 서		관광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강 정 숙
	담 당	신 미 정
	담 당 자	이 선 영 (480-2652)